

전문대학생 연계교육 운영지침

제 정 2009. 3.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가 지역사회 소재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 (이하 “연계교육”이라 하고, 통칭 “○○캠프”라 할 수 있다)을 통하여 각 대학의 교수요원과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도를 높이면서 학생들에게는 상호 학점인정과 진학에 우대를 부여함으로써 열린교육과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충하여 지역사회 대학 간의 교육적 유대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계교육의 운영지침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개설과정) 연계교육에서는 본 대학에 개설된 교양 및 전공과정 또는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교육이 가능한 과정을 개설한다.

제3조 (교육담당) 연계교육은 본 대학 관련 학부에서 주관하되, 본 대학 교수 및 전문대학 교수 그리고, 학계 및 산업체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자가 담당한다.

제4조 (시간 및 학점) ①교육시간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정한다.

②교육시간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계획) 연계교육은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수업계획 등) 연계교육 개설이 확정된 과정을 담당하는 학부에서는 수업 개시전에 담당교수를 배정하고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수강대상자 추천 등) 수강대상자는 총장이 정하는 지역사회의 전문대학 재학생으로서 소속대학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 (수강자 선발) 수강자는 본 대학의 담당학부에서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수강 추천대학의 의견을 물어 선발한다.

제9조 (성적관리) ①이수자에 대하여는 출석결과(20%)와 성과평가(80%)에 따라 성적을 부여한다.

②총 수업시수의 1/3이상을 결석한 자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수료증 수여) 이수자 중 성적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1조 (학적관리) 수강자 전원에 대하여 학적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12조 (학점인정 등) 수료자가 본 대학에 편입학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인정할 수 있다.

1. 편입학 지원 시 연계교육 성적을 우대 가산점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편입학 등록 시 해당학점 및 성적을 선이수 한 성적으로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연계교육 성적이 우수하면서 편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연계교육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